

## 토양오염실태조사

-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 하고, 오염예방 및 정화·복원을 통한 토양의 적절한 관리·보전을 위해 경남 165개소 약 200건 토양을 매년 분석
-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(토양오염실태조사)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(2020. 2. 7. 환경부 예규 제668호)에 따라서
- 시·군·구에서 대상지 자료 조사를 하고 시·도지사는 유역·지방청장과 협의 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에 보고, 환경부는 조사지점 및 계획을 확정
  -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, 지하수 오염지역 등 16개 오염원지역 선정
  - 전년도 조사결과 중금속, 불소는 우려기준의 70%, 그 밖의 물질은 40%를 초과하는 지점은 당해 연도 대상에 포함시켜 다시 조사(20%미만은 제외)
  - 환경부가 통보한 중점오염원 조사 비율을 20% 이상으로 선정
  - 사고발생·민원유발 등 지역의 경우처럼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
- 선정된 지점의 토양을 해당 시·군·구에서 채취하여 연구원에 분석의뢰(5 ~ 10월)
  - 시료채취위치는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채취
  - 시료채취 대상은 확인 가능하거나 또는 추정하는 토양오염원이 대기나 수질에 의한 경우는 표토를 중심으로 채취, 지하저장시설, 매립지 등의 경우는 표토부터 오염개연성이 있는 깊이까지 표층, 중간층, 심토층의 시료 채취, 그 외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채취
- 연구원에서 23항목 분석
  - 중금속(8) : 카드뮴, 납, 구리, 비소, 수은, 6가크롬, 니켈, 아연
  - 유류(5) : 석유계총탄화수소, 벤젠, 톨루엔, 에틸벤젠, 크실렌
  - 유기물(6) : 불소, 유기인, 시안, 페놀, PCBs, 벤조피렌
  - 유기용제(3) 및 기타(1) : PCE, TCE, 1,2-디클로로에탄 및 pH

○ 결과조치: 도 및 해당 시·군 결과 통보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고서를 매년 12월31일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(<https://sgisin.nier.go.kr>)에 입력
- 시·도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에 보고

※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

- 토양정밀조사 명령: 오염 원인자에게 토양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 정밀조사 시행
- 오염 원인자(정화책임자) 없는 경우: 우리원과 시·군 합동 현장조사, 분석
- 초과지역관리대장 작성 및 연 2회 토양복원추진 점검, 환경부 보고: 해당 시·군

대상지점 선정					실태조사	
시·군		도		환경부	시·군 보건환경연구원	
·토양오염 우려지역 대상지 자료조사 (현장방문, 현황파악)	⇒	· 시·군 조사 계획 검토 · 중점 확인 사항 점검 · 유역지방 환경청 협의	⇒	· 시·도별 토 양오염 대상 지점 확정	⇒	· 시·군: 시료채취, 결과 제출 및 시스템 입력 · 보건환경연구원: 시료분석 및 결과통보

이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물환경연구부 설희정연구사 (055-254-23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